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4) 영업비밀

February 27, 2026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네 번째 순서로 영업비밀에 관한 2025년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

1.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영업비밀 사용 이외에 별도로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2.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산업기술 해당성 및 ‘사용’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3.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1.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영업비밀 사용 이외에 별도로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 판시 내용

-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 본 판결의 해석

본 판결은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은 행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 재직 중이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유출하였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회사로 이직한 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해당 장비의 부품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 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미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이를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단지 공동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제3자에 대한 누설’ 또는 ‘제3자로부터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외에 별도의 취득 및 누설로 인한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누설’을 각각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입법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공동 사용을 전제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를 알지 못하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독립된 누설행위에, 이를 넘겨받는 행위는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각각 누설 및 취득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 누설·취득을 거쳐 사용에 이르는 경우가 단순 사용보다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 공모

사용의 경우 누설취득죄를 부정하면 오히려 사용에 착수한 자가 더 가볍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공동정범 사이에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경우라도 이를 단순히 ‘사용의 준비행위’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 및 ‘취득’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공동창업, 동업, 이직 과정에서 각자 취득한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 부정사용 행위와는 별개로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누설 및 취득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행위를 취득·사용·누설로 구분하여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산업기술 해당성 및 ‘사용’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 판시 내용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

■ 본 판결의 해석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참고한 산업기술 자료와 제품의 화합물 종류나 조성 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도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산업기술 해당성]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료 중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 관련 정보는 각각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상 정보**입니다.

이 사건 자료의 산업기술 해당성에 관하여, 제1, 2심은 제조기술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정보만으로 대상 제품을 바로 제조할 수 있거나, 그 정보로부터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적·논리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를 산업기술로 인정할 경우 가벌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기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자료가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최종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제품 제조에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기술 해당성을 부정하였고, 결론적으로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즉,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첨단기술과 관련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인지,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로서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된 정보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산업기술 사용] 한편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사용’의 개념 또한 원심보다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즉, 산업기술의 ‘사용’은 단순히 동일한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을 직접 적용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한 경우도 ‘사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

영업비밀'의 사용에서와 동일한 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참고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에 제품의 조성 정보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개발된 제품의 화합물 종류 및 조성 비율도 상이하여, 해당 자료만으로 제품 조성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참조하여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 등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 '사용'에 의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및 피고인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산업기술'의 범위를 완제품 제조에 직접 필요한 핵심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첨단기술과의 관련성 및 산업경쟁력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 개념에 간접적 활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실제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간·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외연적 한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산업기술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완제품 제조 가능 여부'보다는 '첨단기술과의 기술적 연관성 및 산업경쟁력'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기업 내부의 연구 자료나 중간 단계의 기술정보도 산업기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간 단계의 산업기술 정보의 부정 '사용'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정보를 열람한 것을 넘어, 해당 정보가 제품 조성 도출이나 개발 비용·시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중간 단계 기술정보의 '사용' 성립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 판시 내용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본 판결의 해석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의 2020. 5. 1. 이후 금형제조 기술정보 사용행위**(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침해금지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침해로 인한 영업상이익 침해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2009. 9.경 피해회사의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유출하여 2011. 12.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사용하였으며, 그 후 2020. 5. 1. 다시 그 사용을 재개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침해행위는 종전의 **침해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합하여 일련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종전 유출·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별개의 침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침해행위가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유출·사용 행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및 권한 소멸 후 미반환·보유 행위(동법 제14조 제3호)에 해당하여, 피고 3이 2009. 9.경 퇴직하면서 기술정보를 반출한 행위와 대비할 때 그 내용과 유형이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2012년 말경까지 기술정보를 사용한 이후 2013. 7.경부터 약 5년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20. 5. 1. 이후에 시작된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종전 침해행위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동일한 기술정보를 대상으로 한 침해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속침해’로 볼 수 없고, 침해 유형, 행위 태양, 시간적 경과 및 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침해행위라면 그 금지청구권 역시 별개의 권리로 평가되고, 소멸시효도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침해행위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를 ‘실질적 단절’로 구조화하여 ‘동일 침해의 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침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시간적 단절이 인정되면, 새로운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침해자 입장에서는 종전 침해행위와의 연속성을 설명·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

- | | |
|-------------|---------------------------------------|
| • 임보경 변호사 | T. 02-316-4041 E. bklim@shinkim.com |
| • 윤주탁 변호사 | T. 02-316-4404 E. jtyoon@shinkim.com |
| • 이진희 변호사 | T. 02-316-4328 E. jhelee@shinkim.com |
| • 김충녕 변호사 | T. 02-316-4092 E. cnykim@shinkim.com |
| • 주석호 변호사 | T. 02-316-1759 E. shjoo@shinkim.com |
| • 황지원 변호사 | T. 02-316-1799 E. jwhwang@shinkim.com |
| • 유예지 변호사 | T. 02-316-7282 E. yjyu@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